

# 한국 사회복지사 제도의 현황과 미래

李基永 (釜山大學校)

## 1. 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 현황

### 1) 제도의 역사

- 1970 년 사회복지사업법 제 5 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규정
- 1983 년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사회복지사’ 자격규정 (1,2,3 급 구분)
- 2003 년 사회복지사 1 급자격 국가공인시험시행: 매년 1 회시행, 8 개과목
- 2007.12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령제정 (2009.1 부터 보수교육 시작)
- 2009 년 현재 사회복지계에서는 독립적인 ‘사회복지사법’의 제정을 추진 중

### 2) 사회복지사 규모와 증가추이

점점 증가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 증가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1970 년 사회복지사자격증 제도가 시작된지 30 년만인 1999 년에 약 3 만 5 천명정도의 사회복지사가 존재했지만 그로부터 5 년뒤인 2004 년에 10 만명을 넘어섰고, 다시 3 년 후인 2007 년에 20 만명을 돌파하였고, 다시 2 년 뒤인 2009 년 현재 30 만명을 넘어섰다. 2008 년 지난 한해동안만 무려 6 만명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폭발적인 증가에는 2 급 자격자인 사회복지전공 졸업생들의 존재에 기인한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에서 현재 근무하는 인력은 약 6 만여명으로 추정되어, 사회복지영역의 노동공급이 과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현황: 급수별 (1996 - 2008)

구분	‘96	‘98	‘00	‘02	‘04	‘06	‘08	‘09(1.1-4.30)
1 급	1,373	2,463	4,423	10,487	5,044	5,055	9,170	5,676
2 급	343	330	2,492	6,073	13,722	27,871	50,694	43,919
3 급	942	1,358	239	170	430	389	344	7
계	2,658	4,151	7,154	16,730	19,196	33,315	60,208	49,602
누계	21,244	28,619	42,292	69,323	104,645	163,314	269,074	318,676

## 2. 사회복지 인적자원 관리의 문제

- 1) **인력의 공급과잉의 부정적 영향:** (1) 현재 사회복지인력의 단기적 수요공급은 과잉이 되고 있으나 공급부문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장기적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고 비체계적임 (2) 사회복지사의 처우수준 저하를 초래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수준의 향상을 저해 (3) 사회복지사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저하되고 있다.
- 2) **급수 구분 무의미:** 현재로서 사회복지사 1, 2 급의 직무의 구분이 뚜렷하지 못하여 급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전문성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3) **사회복지사의 자긍심 낮음:** 2009 년 2 월에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행한 인식조사에서 자신을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응답자가 40 퍼센트를 넘었는데, 그 이유는 ‘전문가에 상응하는 적합한 대우가 없기 때문’이 42.2%, ‘고유한 업무영역이 없기 때문’이 27.8%, ‘사회복지사가 너무 많이 양성되어 희소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 20.9%를 차지하고 있었다.
- 4)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 지속:** 휴먼서비스직업군 (교사, 간호사, 공무원 등)에서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열악하고 위험한 업무환경에 시달리고 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 3. 향후의 개선을 위한 방안논의

현재 한국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학회, 교육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는 공동의 노력으로 향후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를 개선시키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모든 노력은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 1) **사회복지사의 급수 조절:** 현행 3 등급체제(1 급-국가고시, 2 급-전공교육이수, 3 급-양성과정)에서 3 급을 폐지하고 2 등급체제로 변화시키는 방안고려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3 급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시기에 존재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과잉공급 상태이므로 국가자격을 단기간의 교육과정(6 주, 12 주, 24 주)으로 부여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2) **무시험 자격제도 폐지:** 사회복지사 2 등급 체제가 시행될 때, 사회복지사 2 급 자격취득도 국가시험 체제로 개편(2010 년 입학생부터 적용하여 2014 년 시행)할 예정이다.
- 3) **사회복지사 유사명칭(또는 동일명칭) 사용금지:**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과정 및 시험제도를 거쳐 부여된 경우 이외 (예: 법적인 근거가 없는 노인복지사, 아동복지사 등)는 사회복지사의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논의.

4)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2007 년 8 월에 입법되었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입법안대로 시행되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규정 (등급별 직무내용, 권한, 보수,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우대조항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전문성제고, 자격관리 엄격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5) **자격급수별 표준 직무규정세부화 논의:** 사회복지사 2 등급 체제로의 변화에 따른 급수별 차별성 명확화, 사회복지 전문직화의 내적구조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급수별 직무규정의 구분은 사회복지사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체계 확립 및 처우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6) **사회복지사법 제정의 준비:** 사회복지사업법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증가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해 지역별, 기관별 처우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호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 등을 법·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정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고조됨. 또한 사회복지사가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례, 또는 이와 반대로 사회복지사가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 등도 사회복지사법에서 보편적 대응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2008 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회복지사의 94.3% 가 사회복지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